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20950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 출 자 : 대통령

주 문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김성수)의 임명에 동의한다.

제안이유

대법관(1인)의 임기가 만료(2026. 9. 7.)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임명동의대상자

- 성 명 : 김 성 수(金 性 洙)
- 생년월일 : 1968년 8월 26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xxx, xxx동 xxx호 (도곡동, xxxxxxxx)

※ 불 입

-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 요청대상자

성명 : 김 성 수 (金 性 洙)

생년월일 : 1968. 8. 26.

2. 임명동의 요청사유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3월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온 정통 법관임.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철저한 기록 파악과 함께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토대를 마련하여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인터넷종합정보제공 사업자(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的一部分을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사람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언론매체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악의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구로동 일대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1964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국가가 1986년 위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과 농민 등을 위증죄로 수사,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농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 등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등을 거쳐 재심이 개시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위 민사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재심의 소가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농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기여함.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해진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이버활동을 지시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부여된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2025. 1.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유죄를 선고하고, 다중이 헌법상 기본권에 터 잡은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적으로 특정장소에 침입하여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어느 정도의 증명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시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보호 및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막연한 환경오염의 가능성 내지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가지는 주거환경에 대한 위해성만을 근거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보다 넓은 공익의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법관연수제도 개편,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함.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사건에 대한 깊은 고민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서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충북지방법원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합니다.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합격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 력 서

성 명 : 김 성 수 (金 性 洙)

생년월일 : 1968. 8. 26.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XXX, XXX동 XXX호 (도곡동, XXXXXXXX)

직 업

2025. 2. ~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 력

1984. 3. ~ 1987. 2. 인성고등학교 졸업

1988. 3. ~ 1992. 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 력

1992. 10.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8. 3. ~ 2000. 2.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0. 2. ~ 200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2000. 2. ~ 2001.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겸임)

2002. 2. ~ 2005. 2.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5. 2. ~ 200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06. 2. ~ 2010. 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 2. ~ 2007. 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겸임)
2007. 2. ~ 2008. 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겸임)
2010. 2. ~ 2011. 2.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2. ~ 2018. 2.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18. 2. ~ 2021. 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2020. 2. ~ 2021. 2.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겸임)
2021. 2. ~ 2023. 2.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2. ~ 2025. 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25. 2. ~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병 역

○ 1995. 3. ~ 1998. 3. 육군 이병(공익법무관, 복무 만료)

상 훈

○ 해당사항 없음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공직후보자 재산공개확인서
-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조회서

재산관련 부속서류